

의 안
변 호

14192

미 첨 부 사 유 서

경제비용추계과 2018-163

의 회 인 : 전 현 희 의 원
접 수 일 : 2018년 05월 10일
회 답 일 : 2018년 05월 29일

과 장 : 양 성 선
분 석 관 : 성 선 애
문 의 : (02) 788-4650

건 축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건축물의 마감재료 적용대상 명시(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)

다가구주택, 의료시설, 학교시설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), 노유자시설의 내부 및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.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한다.

III. 미첨부 사유

개정안은 내부 및 외벽의 마감재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다가구주택, 의료시설, 학교시설, 노유자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이다. 현행 「건축법」 제52조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2항¹⁾에서는 내부 및 외벽에 마감재료 기준

1) 제61조(건축물의 마감재료)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다만,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(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.

1.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·다가구주택, 1의2. 공동주택

2.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·종교집회장·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·학원·독서실·당구장·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. ~ 5. (생략)

6.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(초등학교만 해당한다)·학원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, 숙박시설, 위락시설(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), 장례시설,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(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)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7. (생략)

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상업지역(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)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가.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
에 따라야 하는 건축물을 용도 및 규모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, 개정안에 따라 마감재료의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 건축물이 건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가구주택, 의료시설, 학교시설, 노유자시설로 확대된다.

개정안에 따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의료시설, 학교시설 등을 건축 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등 마감재료 기준에 충족하기 위하여 일반 마감재료 보다 비싼 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. 그런데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 건축물 현황, 각 건축물 별로 내부 및 외벽의 마감재료 추가 소요 비용 등을 알 수 없으므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하기 곤란하다.

IV. 작성자

국회예산정책처 경제비용추계과
과 장 양 성 선
추계세제분석관 성 선 애
(02-788-4650, sasung@assembly.go.kr)

나. 공장(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)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

2.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